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2005. 5. 23.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5월 10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5년 5월 11일
- 다. 상정일자 : 제112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2005. 5. 23)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교통지도과장 김 석 원

가. 제안이유

주차장법령 및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 개선 및 주차난해소를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 노상주차장에서 주차쿠폰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 초과에서 4시간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고 노외주차장에서도 동일 적용

- 공영주차장의 이용제한 대상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추가함.

○ 노상·노외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 설치규격 등을 변경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설치하는자 또는 그 관리책임이 있는자가 정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4조)

○ 도로·광장·공원 등의 노외주차장에 설치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주차장 총면적의 30% 이내로 하고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제외함(안 제15조)

○ 주차방법 제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4조의2)

○ 주차장 설치 보조방법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던 방법에서 구청장이 직접 공사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변경함(안 제24조의3)

○ 보조금을 받거나 주차장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자가 무단용도 변경 등 관련규정 위반시 보조금 또는 공사비를 이자포함 하여 반환토록 규정함(안 제24조의4)

○ 노외공영주차장중 3·4·5급지의 1회주차시 10분당 시간제요금을 인상(안 제2조제1항관련 별표1)

- 3급지 1회주차시 10분당 300원을 400원

- 4급지 1회주차시 10분당 200원을 300원

- 5급지 1회주차시 10분당 100원을 200원

○ 5급지 노외공영주차장을 주·야간 모두 이용시 월 정기요금을 월 5만으로 신설 함(안 제2조제1항관련 별표1)

○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동차를 추가 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의 할인대상지역을 현행 2·3·4·5급지에서 1급지까지 확대(안 제2조제1항관련 별표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9조, 제10조,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담장허물기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내용>

○ 안 제2조제2항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15일 범위이내의 납부유예기간을 두어 자진납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조제2항제1호 에서는 주차장내에 부정 주차차량을 발견한 때에는 1시간을 초과 주차한 것으로 보던 것을 4시간을 초과 주차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부정 주차차량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했음.

○ 안 제3조제8호를 신설하여 주차요금 또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10조에서는 조 제목을 주차장의 표시에서 주차장의 표지로 정정하고, 주차장안내표지판도 주차장설치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시민편의 및 주위경관 등을 고려하여 규격 등을 정하도록 하였음.

○ 안 제21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서는 법개정으로 인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하였음.

○ 안 제24조의2에서는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담장허물기 등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24조의3제2항에는 담장허물기 등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보조방법을 보조금 지급방식에서 구청장이 직접 주차장설치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의4에서는 주차장설치시 보조를 받은 자가 5년 이내 무단 용도변경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때, 보조금 또는 공사비는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노상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현행과 같으나 공영노외주차장의 경우 3급지 내지 5급지 주차요금은 1회주차시 10분당 각각 100원씩 인상하여 3급지는 400원, 4급지는 300원, 5급지는 200원으로 개정하였으며, 5급지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야간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월 정기권 요금을 월 5만원으로 신설하여 월 4만원인 노상주차장과 차별하였음.

○ 비고 제7호다목을 신설하여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추가하고, 비고 제8호에서는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현행 2,3,4,5급지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만 주차요금의 50% 할인혜택을 주었으나 1급지까지 확대하여 50% 할인혜택을 주도록 개정하였음.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맞도록 정비하여 공영주차장 시설기준 및 관리사항 등을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통일함으로써 이용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담당허물기 주차장 설치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주차장 내에 부정 주차차량을 발견한 때에는 1시간 초과에서 4시간 초과 주차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부정 주차차량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하고, 주차요금 또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에도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며, 3,4,5급지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도 1회주차시 10분당 각각 100원씩 인상됨에 따라 이용시민들의 혼동과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도 예상되는 바,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시설주차장 운영 형태와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시설한 공영주차장의 수지균형 등을 참고하여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정형기 위원) : 시설주차장 내에도 부정 주차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 답변요지(김석원 교통지도과장) : 노상주차장이 해당됨.
- 질의요지(남두희 위원) : 노상주차장도 월 1만원씩 인상되는가?
- 답변요지(김석원 교통지도과장) : 시설주차장만 해당됨.
- 질의요지(신봉현 위원) : 주차관리인이 주차요금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답변요지(김석원 교통지도과장) : PDA로 관리하고 있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5. 5.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개정 이유

주차장법령 및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 개선 및 주차난해소를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및 제3조)

(1) 노상주차장에서 주차쿠폰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 초과에서 4시간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고 노외주차장에서도 동일 적용

(2) 공영주차장의 이용제한 대상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추가함.

나. 노상·노외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 설치규격 등을 변경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설치하는자 또는 그 관리책임이 있는자가 정하도록 함. (안 제10조 및 제14조)

다. 도로·광장·공원 등의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주차장 총면적의 30% 이내로 하고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함(안 제15조)

라.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24조의2)

마. 주차장 설치 보조방법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던 방법에서 구청장이 직접 공사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변경함. (안 제24조의3)

바. 보조금을 받거나 주차장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자가 무단용도 변경 등 관련규정 위반시 보조금 또는 공사비를 이자포함 하여 반환토록 규정함. (안 제24조의4)

사. 노외공영주차장중 3·4·5급지의 1회주차시 10분당 시간제요금을 인상
(안 제2조제1항관련 별표1)

(1) 3급지 1회주차시 10분당 300원을 400원

(2) 4급지 1회주차시 10분당 200원을 300원

(3) 5급지 1회주차시 10분당 100원을 200원

아. 5급지 노외공영주차장을 주·야간 모두 이용시 월 정기요금을 월 5만원으
로 신설 함(안 제2조제1항관련 별표1)

자.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동차를 추가하고 경형자
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의 할인대상지역을 현행 2·3·4·5급지에서 1급지
까지 확대 (안 제2조제1항관련 별표1)

3. 근거법령

가.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

나. 주차장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등)

다.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200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기편성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2005. 4. 6 ~ 4. 26) 결과 특이한 사항 없음.

나.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5. 5. 9)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호 중 “1시간”을 “4시간”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서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주차쿠폰 또는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주차시간의 산정은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당해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제3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차 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제10조의 제목 중 “표시”를 “표지”로 하고, 동조제1항 중 “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시”를 “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로 하며, 동조제2항 중 “그 규격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를 “그 규격 등은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3호중 “사용기간”을 “사용시간”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되”를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부대시설”을 “부대시설 설치기준”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을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으로,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을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주차장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의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3호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제10조제2항”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으로, “동법 제9조”를 “동법 제21조”로 한다.

제24조의2 제목중 “보조금 지원대상”을 “보조금 지원 또는 보조의 대상”으로 하고,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가의 주차난해소를 위한 다음각호의 1과 같은 담장허물기등 주차장 설치사업의 보조

가.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나.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는 경우

제24조의3 제1항 및 제2항은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4조의2에 의한 보조금 지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원 또는 보조의 기준·보조금액·보조조건·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제

24조의2제1호에 의한 주차장설치 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이하 “주차장설치보조공사”라 한다)으로 한다.

제24조의4의 제목중 “보조금의 반환”을 “보조금 또는 공사비의 반환”으로 하고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또는 보조공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공사비(이하 “보조금 등”이라 한다)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을 경우
 2. 보조를 받아 설치한 주차장을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임의폐쇄 등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 ② 보조금 또는 주차장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등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 원금과 보조금 수령일 또는 주차장설치 보조공사 시행일로부터 반환일까지 보조조건에서 정한 이자를 합산하여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관련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공영노외주차장 1회주차시 10분당관 중 5급지 “100”을 “200”으로, 4급지 “200”을 “300”으로, 3급지 “300”을 “400”으로 하고, 표 하단의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 정기권 요금은 4만원으로 함.”을 “5급지 주차장을 주·야간 모두 이용시 월 정기권 요금을 노상주차장 : 월4만원, 노외주차장 : 월5만원”으로 한다.

별표1의 비고란 제7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별표1의 비고란 제8호 중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2·3·4·5급지 주차장의 경우”를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로 하고, 동호의 단서 중 “지하철 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는”을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을 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별지제1호서식 내지 별지제4호서식은 각각 삭제한다.

별지제9호서식을 별첨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 등을 신청하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제15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9호 서식]

『Green Parking 2006』 사업참여 신청서

소유주 인적사항	주소 성명	동 번지 호	전화번호	집 핸드폰	
〈우리집 꾸미기 평면그림〉			〈정비를 원하시는 내용 기재〉		
			○ ○ ○ ○ ○ ○		
〈원하는 나무 선택 기재〉					
○ ○ ○ ○					
<p>상기와 같이 신청하오며 아래사항을 반드시 준수 하겠습니다.</p> <p>①공사완료후 5년간은 현재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주차장을 다른 용도나 임의폐쇄등의 여타조치를 절대로 하지 않겠으며, ②담장을 허문경계에 펜스는 절대로 설치 하지 않겠음</p> <p>상기 내용을 위배할 경우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공사비로 지원받은 금액과 이금액에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지체없이 반납하겠기에 이에 각서하며 위와 같이 『Green Parking 2006』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첨부 : 인감증명서 1통</p>					
			20		
			신청인 (인) (인감도장 날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생 략)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당해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단서 신설></u></p> <p>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u>1시간</u>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과 부과한다.</p> <p>2. ~ 10. (생 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3조(주차거부금지) 1. ~ 7.(생 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 ----- -----</p> <p>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u></p> <p>1. ----- ----- ----- <u>4시간</u> ----- ----- -----</p> <p>2. ~ 10. (현행과 같음) ③<u>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서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주차쿠폰 또는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주차시간의 산정은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당해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부과한다.</u></p> <p>제3조(주차거부금지) 1. ~ 7.(현행과 같음) 8. <u>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u></p>

현행	개정안
<p>제 10조 (주차장의 표시)</p> <p>① <u>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시</u>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 중 주차장표지에 의한다.</p> <p>②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u>그 규격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u>.</p> <p>1. ~ 2. (생략)</p> <p>3. 주차장의 <u>사용기간</u></p> <p>4. ~ 5. (생략)</p>	<p>제 10조 (주차장의 <u>표지</u>)</p> <p>① <u>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u> ----- ----- -----</p> <p>② ----- ----- -----</p> <p>----- <u>그 규격 등은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u></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u>사용시간</u></p> <p>4. ~ 5. (현행과 같음)</p>
<p>제 14조 (주차장의 표지)</p> <p>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는 <u>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되</u> 그 표지상단에 구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p> <p>② <u>제10조제2항의 규정은 공영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u></p> <p>③ <u>공영노외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안내표지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u></p>	<p>14조 (주차장의 표지)</p> <p>① ----- -----<u>제 1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u> ----- -----</p> <p>② <삭 제></p> <p>③ <삭 제></p>
<p>제 15조 (노외주차장의 <u>부대시설</u>)</p> <p>① ~ ② (생략)</p> <p>③ <u>1급지 지역중 상업지역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로 한다.</u></p>	<p>제 15조 (노외주차장의 <u>부대시설 설치기준</u>)</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법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1급지 지역중 상업지역</u>----- ----- -----, <u>업무시설 (오피스텔은 제외한다),</u> -----</p>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21조의3(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생략) 1. ~ 2. (생략) 3. 토지가액은 <u>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 제10조제2항</u>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동법 제9조</u>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p> <p>② (생략) 1. ~ 2. (생략) 3. 토지가액은 <u>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 제10조제2항</u>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동법 제9조</u>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p>	<p><u>④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주차장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의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 이내로 한다.</u></p> <p>제21조의3(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u>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9조제2항</u> ----- ----- ----- <u>동법 제21조</u>----- ----- -----</p> <p>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u>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9조제2항</u> ----- ----- ----- <u>동법 제21조</u>----- ----- -----</p>

현행	개정안
<p>제24조의2(보조금 지원대상) (생략)</p> <p>1.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자가 기존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2. (생략)</p>	<p>제24조의2(보조금 지원 또는 보조의 대상) (현행과 같음)</p> <p>1.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담장허물기등 주차장 설치사업의 보조</p> <p>가.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p> <p>나.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는 경우</p> <p>2. (현행과 같음)</p>
<p>제24조의3(보조의 방법 등)</p> <p>①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주차장 설치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액, 보조조건, 절차 등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③(생략)</p>	<p>제24조의3(보조의 방법 등)</p> <p>①제24조의2에 의한 보조금 지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보조금 지원 또는 보조의 기준·보조금액·보조조건·방법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제24조의2제1호에 의한 주차장 설치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이하 “주차장설치 보조공사”라 한다)으로 한다.</p> <p>③(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24조의4(보조금의 반환)</p> <p>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반환 해야 한다.</p> <p>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p> <p>2. 보조금을 지급받아 설치한 주차장용 사후에 다른 용도나 임의폐쇄 등 주차 시설을 변경할 경우</p> <p>3. (생략)</p> <p>②보조금을 수령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원금과 보조금 수령일로부터 반환일까지 보조원금에 대하여 보조조건에서 정한 이자를 계산하여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p>	<p>제24조의4(보조금 또는 공사비의 반환)</p> <p>①보조금을 지원받거나 또는 보조공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공사비(이하 “보조금 등” 이라 한다)를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p> <p>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 받았을 경우</p> <p>2. 보조를 받아 설치한 주차장을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임의폐쇄 등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p> <p>3. (현행과 같음)</p> <p>②보조금 또는 주차장설치 보조공사를 받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등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 원금과 보조금 수령일 또는 주차장설치 보조공사시행일로부터 반환일까지 보조조건에서 정한 이자를 합산하여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공영주차장</th> <th colspan="2">공영노외주차장</th> </tr> <tr> <th>구분</th> <th>주차요금</th> <th>구분</th> <th>주차요금</th> </tr> </thead> <tbody> <tr> <td>1급지</td> <td>800</td> <td>1급지</td> <td>800</td> </tr> <tr> <td>2급지</td> <td>500</td> <td>2급지</td> <td>500</td> </tr> <tr> <td>3급지</td> <td>300</td> <td>3급지</td> <td>400</td> </tr> <tr> <td>4급지</td> <td>200</td> <td>4급지</td> <td>300</td> </tr> <tr> <td>5급지</td> <td>100</td> <td>5급지</td> <td>200</td> </tr> </tbody> </table> <p>※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인이 주차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 정기권 요금은 4만원으로 함.</p> <p style="text-align: center;">- 비 고 -</p> <p>1. ~ 6. (생략) 7. (생략) 가. ~ 나.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8.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2.3.4.5급지 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p> <p>9 ~ 15. (생략)</p>	공영주차장		공영노외주차장		구분	주차요금	구분	주차요금	1급지	800	1급지	800	2급지	500	2급지	500	3급지	300	3급지	400	4급지	200	4급지	300	5급지	100	5급지	200	<p>[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공영주차장</th> <th colspan="2">공영노외주차장</th> </tr> <tr> <th>구분</th> <th>주차요금</th> <th>구분</th> <th>주차요금</th> </tr> </thead> <tbody> <tr> <td>1급지</td> <td>800</td> <td>1급지</td> <td>800</td> </tr> <tr> <td>2급지</td> <td>500</td> <td>2급지</td> <td>500</td> </tr> <tr> <td>3급지</td> <td>300</td> <td>3급지</td> <td>400</td> </tr> <tr> <td>4급지</td> <td>200</td> <td>4급지</td> <td>300</td> </tr> <tr> <td>5급지</td> <td>100</td> <td>5급지</td> <td>200</td> </tr> </tbody> </table> <p>※ 5급지 주차장을 주차간 모두 이용시 월 정기권 요금 - 노상주차장 : 월 4만원 - 노외주차장 : 월 5만원</p> <p style="text-align: center;">- 비 고 -</p> <p>1. ~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p> <p>다. <u>고업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업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u></p> <p>8. _____ _____ <u>경형자동차</u> 에 대하여 _____ _____ <u>지하철환승주차장에서 환</u> <u>승을 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에 대</u> <u>하여는</u> _____ _____</p> <p>9. ~ 15. (현행과 같음)</p>	공영주차장		공영노외주차장		구분	주차요금	구분	주차요금	1급지	800	1급지	800	2급지	500	2급지	500	3급지	300	3급지	400	4급지	200	4급지	300	5급지	100	5급지	200
공영주차장		공영노외주차장																																																							
구분	주차요금	구분	주차요금																																																						
1급지	800	1급지	800																																																						
2급지	500	2급지	500																																																						
3급지	300	3급지	400																																																						
4급지	200	4급지	300																																																						
5급지	100	5급지	200																																																						
공영주차장		공영노외주차장																																																							
구분	주차요금	구분	주차요금																																																						
1급지	800	1급지	800																																																						
2급지	500	2급지	500																																																						
3급지	300	3급지	400																																																						
4급지	200	4급지	300																																																						
5급지	100	5급지	200																																																						